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민형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10546

발의연월일: 2025. 5. 19.

발 의 자:민형배・이개호・김동아

박지원 · 김용민 · 김현정

양문석 • 이성윤 • 소병훈

김성환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기획재정부의 과도한 권한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,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권한을 해당 주무기관의 장에게 분산하고자 합니다.

현재 기획재정부는 예산 편성, 경제 정책 기획, 세제 관리, 성과 평가 등 정부 내 핵심 기능을 광범위하게 관장하며,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습니다. 공공기관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, 효율적이고책임 있는 경영이 필수입니다. 이를 위해 현재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공공기관의 경영성과와 책임성을 점검하는 경영실적 평가를 직접 수행하고 있으며, 그 결과에 따라 기관장 해임 건의 등 강력한 후속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.

문제는, 경영실적 평가가 기획재정부에 지나치게 종속되어 있다는 점입니다. 정권에 따라 평가지표를 자의적으로 변경하고, 평가위원 100여 명 전원을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등 기획재정부가 평가 전반에 직접적이고 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.

이에,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권한을 주무기관의 장에게 분산하고 자 합니다. 경영평가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, 기획재정부 권한 집중 문제를 해소하고자 합니다(안 제48조).

법률 제 호
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12호를 삭제한다.

제24조의2제3항 중 "기획재정부장관"을 "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"으로 한다.

제25조제6항 중 "제8항"을 "제9항"으로 한다.

제34조제1항제2호 중 "제8항"을 "제9항"으로 한다.

제48조제1항 본문 중 "기획재정부장관"을 "주무기관의 장"으로, "공기업·준정부기관"을 "소관 공기업·준정부기관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기획재정부장관"을 "주무기관의 장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중 "기획재정부장관"을 "주무기관의 장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"기획재정부장관은 운영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"를 "주무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"로, "해당 기관에 대하여주의·경고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주무기관의 장 또는 기관장에게"를 "해당 기관에 대하여주의·경고 조치 또는 관련자에 대한 인사상의조치 등을 취하거나 기관장에게"로 하며, 같은 항 후단 중 "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"을 "주무기관의 장"으로, "운영위원회의심의·의결을 거쳐"를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"로 하고, 같

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운영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"을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주무기관의 장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6항 중 "기획재정부장관"을 "주무기관의 장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7항 중 "기획재정부장관은 운영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"를 "주무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"로, "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한다"를 "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"로 하며, 같은 조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9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9항(종전의 제8항) 중 "기획재정부장관"을 "주무기관의 장"으로, "운영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"를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"로하고, 같은 조 제10항(종전의 제9항) 중 "기획재정부장관"을 "주무기관의 장"으로, "운영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"를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"로의 장"으로, "운영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"를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"로의 장"으로, "운영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"를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"로 한다.

⑧ 제7항에 따라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제출받은 기획재정부장관은그 결과를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조(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설	제8조(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설
치)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하여	え])
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	
의・의결하기 위하여 기획재정	
부장관 소속하에 공공기관운영	
위원회(이하"운영위원회"라 한	
다)를 둔다.	,
1. ~ 11. (생 략)	1. ~ 11. (현행과 같음)
<u>12.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공기</u>	<u><삭 제></u>
업·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	
<u>평가 등</u>	
13. ~ 17. (생 략)	13. ~ 17. (현행과 같음)
제24조의2(양성평등을 위한 임원	제24조의2(양성평등을 위한 임원
임명 목표제) ①·② (생 략)	임명 목표제) ①・② (현행과
	같음)
③ 기관장은 제2항에 따른 목	3
표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연차	
별 보고서를 <u>기획재정부장관</u> 에	<u>기획재정부장관과</u>
게 제출하여야 한다.	<u>주무기관의 장</u>
④ (생 략)	④ (현행과 같음)
제25조(공기업 임원의 임면) ①	제25조(공기업 임원의 임면) ①
~ ⑤ (생 략)	~ ⑤ (현행과 같음)
⑥ 공기업의 장은 제22조제1항,	6

제35조제3항, 제48조제4항·<u>제8</u>항 및 제52조의3제3항에 따라 그 임명권자가 해임하거나 정 관으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해임되지 아니한다.

⑦ (생략)

제34조(결격사유) ①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은 공기업·준정부기관의 임원 이 될 수 없다.

- 1. (생략)
- 2. 제22조제1항, 제31조제7항, 제35조제2항·제3항, 제36조 제2항, 제48조제4항·<u>제8항</u> 및 제52조의3제3항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②・③ (생 략)

제48조(경영실적 평가) ① <u>기획재</u> 정부장관은 제24조의2제3항에 따른 연차별 보고서, 제31조제3 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계 약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, 제46 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목표와 경영실적보고서를 기초로 하여

<u></u> 利度)
<u> উ</u> }	
<u>.</u>	
⑦ (현행과 같음)	
세34조(결격사유) ①	
1. (현행과 같음)	
2	
제9항-	
②·③ (현행과 같음)	
에48조(경영실적 평가) ① <u>주무기</u>	
관의 장	

공기업·준정부기관의 경영실 적을 평가한다. 다만,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·준정부기 관으로 지정(변경지정은 제외 한다)된 해에는 경영실적을 평 가하지 아니한다.

-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본 문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·준 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하 는 경우 「국가재정법」 제82 조(기금운용의 평가)의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평가를 받는 기 관과 「과학기술기본법」 제32 조(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육성) 제3항에 따라 평가를 받는 기 관에 대하여는 그 평가 결과를 활용한다.
- ③ <u>기획재정부장관</u>은 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의 평가를 위하 여 필요한 경우 공기업·준정 부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- ④ 공기업·준정부기관이 제24 조의2제3항에 따른 연차별 보 고서, 제3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계약의 이행에 관한 보고

소관 공기업·준정부기관
,
② 주무기관의 장
③ 주무기관의 장
4

서, 경영실적보고서 및 그 첨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 · 제출한 경우 또는 불공정한 인사운영 등으 로 윤리경영을 저해한 경우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은 운영위 원회의 심의 · 의결을 거쳐 경 영실적 평가 결과와 성과급을 수정하고, 해당 기관에 대하여 주의 · 경고 등의 조치를 취하 거나 주무기관의 장 또는 기관 장에게 관련자에 대한 인사상 의 조치 등을 취하도록 요청하 여야 한다. 이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은 감 사, 감사위원회 감사위원 또는 기관장이 관련 직무를 이행하 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하였다 면 운영위원회의 심의 · 의결을 거쳐 해당 감사, 감사위원회 감 사위원 또는 기관장을 해임하 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.

⑤ 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의 평가 기준과 방법은 운영위원

주무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
정하는 절차에 따라
해당 기관에 대하여 주의ㆍ
경고 조치 또는 관련자에 대한
인사상의 조치 등을 취하거나
<u>기관장에게</u>
<u>주무기</u>
관의 장
대통령령으로
정하는 절차에 따라
⑤
<u>대통령령으</u>

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기획 재정부장관이 정하되, 공기업· 준정부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.

- 1. ~ 7. (생략)
-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의 효율적인 수행과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전문적·기술적인 연구 또는 자문을 위하여 공기업·준정부기관경영평가단(이하 "경영평가단"이라 한다)을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-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운영위원 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매년 6월 20일까지 공기업·준정부 기관의 경영실적 평가를 마치 고, 그 결과를 <u>국회와 대통령에</u> 게 보고한다.

<신 설>

⑧ 기획재정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결과 경영

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주무기
관의 장
1. ~ 7. (현행과 같음)
⑥ <u>주무기관의 장</u>
<u>.</u>
⑦ 주무기관의 장은 대통령령
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
기획재정부장관에
게 제출하여야 한다.
⑧ 제7항에 따라 경영실적 평
가 결과를 제출받은 기획재정
부장관은 그 결과를 국회와 대
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<u> </u>

실적이 부진한 공기업·준정부 기관에 대하여 <u>운영위원회의</u> 심의·의결을 거쳐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기관장 ·상임이사의 임명권자에게 그 해임을 건의하거나 요구할 수 있다.

⑨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결과 인건비 과다편성 및 제50조제1항에 따른 경영지침 위반으로 경영부실을 초래한 공기업·준정부기관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향후 경영책임성 확보 및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인사상 또는 예산상의 조치 등을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

① (생략)

<u>대통령령으로 정</u>
하는 절차에 따라
<u>⑩</u> 주무기관의 장
대통령령으로
정하는 절차에 따라
<u>.</u>
⑪ (현행 제10항과 같음)